

결 과 보 고 서

2021 년도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2021 년도 연구과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1. 17.

소속부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책임자 : 김 상 겸 (인)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Student Athletes
Perpetrating School Violence

2022. 1. 17.

연구책임자 : 김 상 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 법 학 회)

공동연구자 : 남 기 연 (단 국 대 학 교)

윤 태 영 (아 주 대 학 교)

진 도 왕 (인 천 대 학 교)

김 대 희 (부 경 대 학 교)

초 록

일부 유명 스포츠선수들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체육 현장에서의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021년 2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징계정보시스템 구축, 22년)에 더해,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징계정보시스템에 학교폭력 이력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징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였고,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

아울러,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전학의 경우 12개월) 동안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학교 졸업 후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될 경우 체육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도록 징계정보의 운영·활용에 대해 법 일반원칙 및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4절 연구의 과정	7
제2장 일반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처리 및 조치기록 관리 분석	8
제1절 학교폭력 개념 및 현황	8
제2절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및 처리 절차	12
제3절 학교폭력 조치기록 관리 현황	16
제4절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따른 학생선수 가해기록 및 삭제절차 검토 ·	19
제5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분석	21
제6절 가해학생의 가해조치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검토	24
제3장 가해 학생선수 징계정보 관리·보존의 주요 쟁점	27
제1절 법 일반원칙 및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	27
제2절 통합징계정보시스템 운영 상 쟁점	37
제3절 징계정보 활용 방안의 쟁점	40
제4절 해외사례 검토	42
제5절 소결	45
제4장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 활용 및 통합관리 방안	47
제1절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47
제2절 가해 학생선수 학교폭력 기록 통합관리(운영) 방안	52
제3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및 역할 정립	54
제4절 선수선택 및 운영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활용방안	57
제5장 결론	61

표 목차

표 1. 연구의 방법	6
표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8
표 3.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10
표 4.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가해이유	11
표 5. 가해학생 가해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삭제 절차	20
표 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23
표 7. 학교폭력 행위 유형 및 시효기간	34
표 8.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 징계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개정안	43
표 9. 체육특기자 자격심사 취소 관련 개정안	45
표 10.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및 변경사항 ..	47
표 1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관련 개정안	49
표 12.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안)	53
표 13. 각 프로 연맹별 상벌위원회 규정개정을 통한 재제조치	54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과정	7
그림 2. 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율	9
그림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13
그림 4.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2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체육 현장에서의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되었다.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소속팀, 단체별 출전정지, 국가대표 자격박탈 등 제재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사 사례 폭로가 잇따랐다. 유명 스포츠 선수가 학생(선수)들의 롤모델이 되는 등 큰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재 여론 크게 확산되었고 결국 국내에서는 선수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해외리그로 진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정부차원에서도 '19년과 '20년 체육지도자의 선수 인권침해 등 중대한 체육계 폭력·성폭력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친화적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최근 「국민체육진흥법」의 3차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성폭력 등 체육지도자 제재·자격 제한 강화, 훈련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실업팀 표준계약서 도입, 비위 체육지도자 명단공표,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과거 학교운동부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침해에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학교운동부를 비롯한 실업팀 등 지도자는 실적 중심 평가(성적, 진학 등)를 통해 계약 연장 등의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선수들의 기량 향상 등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성과만 좋으면 폭력 등 인권 침해가 용인·정당화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선수의 경우도 상급학교 진학, 실력 향상 등을 위해 인권침해 감수 또는 내면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선수 실태조사(2019년 11월)에 따르면 학생선수의 신체폭력 경험 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초등학생 38.7%, 중학생 21.4%로 나타났다.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특기자 선발제도로 인해 팀 내 실력있는 선수에게 권한과 지원이 집중되어, 선수간 서열화 및 왜곡된 관계(폭력, 따돌림 등)를 조장하고 있는 구조이

다.

특히, 학교폭력경우 향후 선수활동에 지장이 없는 미온적 처벌로 인해 재발 방지 및 예방효과 미약한 현실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생(선수)에 대한 조치(사과, 봉사, 전학 등)는 대회 참가 제한 등 선수생활에 대한 제재와 연계 미비하다. 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체육단체나 종목단체에 통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학생선수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하여 징계 등을 받았다하더라도 대회참가 제한 등 제재조치를 체육단체나 종목단체에서 실행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행위의 시효완료 등으로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거나, 스포츠 선수의 중대한 학교폭력 이력이 드러나도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위원회규정’상 징계시효가 최대 5년이고, 「형법」에 따른 폭행의 공소시효가 5~10년으로 학생선수 시절에 일어나 학교폭력 사건으로 성인이 된 선수에게 그 책임을 물어 체육단체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처리방향 제시 및 향후 체육 현장에서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긴요한 시점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021년 2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실규명, 제재 등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 동의 시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지원,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 조치 및 촘촘한 감시망 구축으로, 실질적 폭력 예방 효과 강화, 경기실적 및 지도자 평가방법 합리화, 학습·운동 병행 여건 조성 및 과학적 훈련방법 지원 확산 등이다.

이 연구는 학교운동부 시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상급학교로의 진학, 직장운동경기부 및 프로스포츠단 입단, 국가대표 선발, 지도자(감독·코치) 및 체육단체 임직원 채용 등의 과정에서 징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징계이력 통합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대회출전 및 선수생활 제한, 취업제한 등으로 연계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징계정보 보존 및 활용 등 통합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1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조사에 참여한 만 14세 이상 학생선수(926명) 중 최근 3년간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9.6%, 신체폭력 경험이 있는 선수는 7.6%로 드러났다. 선수의 가해자 유형으로는 지도자 68.3%, 선배선수 50.9%, 동료선수 13.0% 등으로 나타났다. 2년 전 조사 결과에 비해 폭력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에 대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학교 졸업 후 학교폭력 이력이 확인 될 경우 체육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법 일반원칙 및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해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고 세부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방안 마련으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처리 및 조치기록 관리 분석한다. 학교폭력 개념 및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개념, 유형, 관련 실태조사 결과 분석한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가해 학생의 징계 및 처리 절차 분석한다.

둘째, 가해학생 징계 및 조치기록 관리 현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 조치결정 기준, 가해학생 조치기록 관리 및 처리절차(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 및 삭제)를 중심으로 하며, 관련 통계현황 수집·분석하도록 한다.

셋째, 가해 학생선수 징계정보 관리·보전의 주요 쟁점 분석한다. 가해학생 조치결정(1호~9호)에 따른 학생선수 가해기록 보존 연한 설정 및 보존기한 확대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서면사과(1호), 접촉·보복금지(2호), 교내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에 따른 학생선수 가해기록 보존 연한 설정을 검토한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기록의 경우 졸업 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삭제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존연한 설정 방안 및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넷째,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제한 규정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외 주요국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 제한 규정의 존재 여부 및 존재 시 관련 내용 조사·분석 및 시사점 도출한다.

다섯째,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 활용 및 통합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 관리 및 활용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의 경우 일선 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체육단체에서 관련 조치기록의 관리 가능 여부 및 활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한다. 또한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징계정보) 등을 활용방안을 대하여 대학입시, 국가대표, 실업팀, 프로입단에서 적용방안(해외사례 포함)을 검토한다.

2. 연구의 방법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방안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방법은 입법론적 연구, 문헌조사, 비교법적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심층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방안 연구’는 연구 특성상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입법론적 연구, 전문가 회의 및 전문가 집단 심층면접(FGI)를 통한 현장의견 수렴·반영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입법론적 연구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관련 규정·지침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체계의 정비방안 제시한다.

이 외에도 「학교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윤리센터’ 규정, 대한체육회 및 체육단체 징계관련 규정 등 법령 및 각종 규정·지침 조사·분석한다.

문헌조사 및 비교법적 연구는 관련 법안 의안원문, 상임위 검토보고서, 관련 논문 등을 분석과 해외 주요국의 입법현황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 및 과제 도출하도록 한다.

주요국 해외사례는 독일(DOSB), 호주(AOC), 미국(USOC), 일본(JOC), 영국(BOA)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체육단체의 제재 관련 규정 조사·분석한다.

현장 의견수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방안 연구’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부처 및 이해관계자(체육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타운홀 미팅 등 숙의형 민주주의 활용)을 통하여 사용자와 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추진 도모한다.

이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법안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협의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방안 연구’의 객관성과 보편타당성 최대한 확보한다.

표 1. 연구의 방법

연구 방법	주요 내용
입법론적 연구	• 학교폭력 관련 법령(규정)의 입법체계의 변화과정 연구 • 입법기술적인 관점에서의 입법체계 및 관련 규정 정비방안 제시
문헌조사 연구	•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에 관한 국내외 문헌을 분석 • 학교폭력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시 국회심의경과 및 총회, 이사회 회의록 분석
비교법적 연구	• 주요외국의 학교폭력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가 제재 관련 법제(규정)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관련법령의 입법론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전문가 회의 및 현장의견 수렴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와의 면담 및 의견수렴 •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통합관리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 기타 워크숍 및 전문가회의 개최, 델파이 조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

제4절 연구의 과정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단계별 주요내용과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과정



제2장 일반학생 학교폭력 가해자 징계처리 및 조치기록 관리 분석

제1절 학교폭력 개념 및 현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정의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판례도 “학교폭력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¹⁾ 학교폭력의 세부 유형으로는 크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및 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고, 학생들 간의 장난이라고 인식되는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 될 수 있으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폭력인 만큼 가해자가 학생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²⁾

1) 서울행정법원 2014.6.20. 선고 2014구합250 판결.

2)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3., 8면.

학교폭력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의 개념, 법적 폭력의 개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행위 등이 시대적으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과거에는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행위가 현재에 와서 학교폭력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폭력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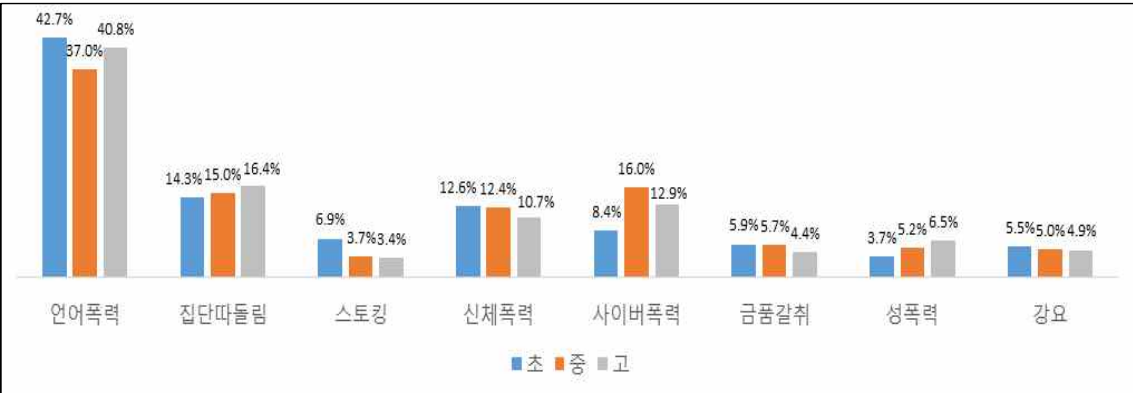
특히,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 학생 간의 폭력행위를 넘어서 체육계 특성에 따른 기수 문화와 위계에 의한 폭력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체육계 폭력의 발생 상황 및 원인을 법적인 측면에 더해 서사적이고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 학교폭력 실태 현황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감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20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언어폭력, 신체폭력은 증가하였으나,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소폭 감소하였고,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41.7%), 집단따돌림(14.5%), 신체폭력(12.4%), 사이버폭력(9.8%)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언어폭력, 중학교에서는 사이버폭력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가해자 유형으로는 같은 학교에 같은 반 학생(39.1%), 같은 학년(30.7%)이 가장 높았고, 같은 학교 다른 학년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잘 모르는 사람의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피해장소는 학교 안에서의 폭력이 55.3%, 학교 밖에서의 폭력이 40.6%로 집계되었다.³⁾

그림 2. 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율



* 출처: 교육부

3) 교육부 보도자료,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1.9., 3면 이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대한체육회의 협조를 받아 2019년 5월 기준으로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폭력행위의 유형으로는 크게 언어폭력(욕, 소리지르기, 과도한 요구 등), 신체폭력(머리박기, 손이나 발로 구타, 계획에 없는 과도한 훈련, 운동기구를 이용한 구타 등), 성폭력(불필요한 신체접촉, 신체를 강제로 만지기, 신체부위 응시, 음담패설 등)이 있었고,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선수들 중 약 34.2%가 운동을 하면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선수의 경우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중·고등학교 선수들은 신체폭력을 경험한 것이 높게 집계되었다.⁴⁾

표 3.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단위: 명[%])

급별	응답자수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력	합계
초등학생	18,007	3,423(19.0)	2,320(12.9)	438(2.4)	6,181(34.3)
중학생	21,952	3,039(13.8)	3,288(15.0)	1,071(4.9)	7,398(33.7)
고등학생	17,598	2,573(14.6)	2,832(16.1)	703(4.0)	6,108(34.7)
합계	57,557	9,035(15.7)	8,440(14.7)	2,212(3.8)	19,687(34.2)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9).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자료집

3. 체육계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분석

학교폭력의 배경과 원인은 다양하며,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얹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크게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는 청소년기에 정신적 발달이 신체적 성장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불안한 상황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거치면서 욕구불만이나 갈등의식을 느끼게 되고, 권위와 규율에 저항하려는 사춘기적 특성 심리로 인하여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정, 학교,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가정적 요인으로는 성격과 정서적 특성을 형성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부모의 태도, 전체적이거나 일관성 없는 양육, 과잉보호 또는 무관심 등을 들 수 있으며, 학교적 요인으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 전인교육의

4) 문화체육관광부, “2019 체육백서”, 2021.6.1., 568면.

부재로 인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을 형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빈부격차에 따른 심리적 열등감과 산업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감의 상실 및 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만연, 대중매체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 등을 들 수 있다.⁵⁾

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학교폭력의 가해 이유로는 아래와 같다.

표 4.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가해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초	중	고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	20.5	22.6	12.5	10.7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35.7	35.7	37.3	30.2
오해와 갈등으로	10.5	8.9	16.9	17.9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8.4	7.5	11.1	14.2
다른 친구가 하니까	4.1	3.9	4.8	5.0
화풀이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10.3	10.8	7.3	11.7
강해 보이려고	5.3	5.5	4.6	4.5
나의 보호자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1.9	1.9	1.9	3.1
선배나 친구가 시켜서	3.3	3.2	3.6	2.8

* 출처: 교육부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 인권침해는 가해자 개인의 잘못보다는 폭력적 문화가 지속되는 구조적 모순이 주된 원인으로 먼저, 국위선양에 따른 경기실적 중심의 평가로 인하여 선수 개인은 방법과 수단이라는 과정을 배제한 채 경기에서의 실적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내할 수 있는 일로 치환하는 관행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로 선후배 간 상명하복의 구조로 인하여 부당한 요구나 행동에 대해 침묵을 하는 스포츠 분야의 문화적 환경을 들 수 있으며, 그 밖에 비과학적이고도 과도한 훈련 및 인권교육의 부재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시스템 및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스템의 부실한 측면을 들 수 있다.⁶⁾

5) 홍종관,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초등상담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2012., 241면 이하.

6) 홍덕기,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4권 제1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2., 41면 이하.

제2절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 및 처리 절차

1. 가해 학생 징계 및 처리 절차 현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9가지의 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조치의 순으로 열거된 것으로 크게 교내선도, 외부기관 연계선도, 교육환경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상세 내용으로는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위의 조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장 강력한 조치인 퇴학처분의 경우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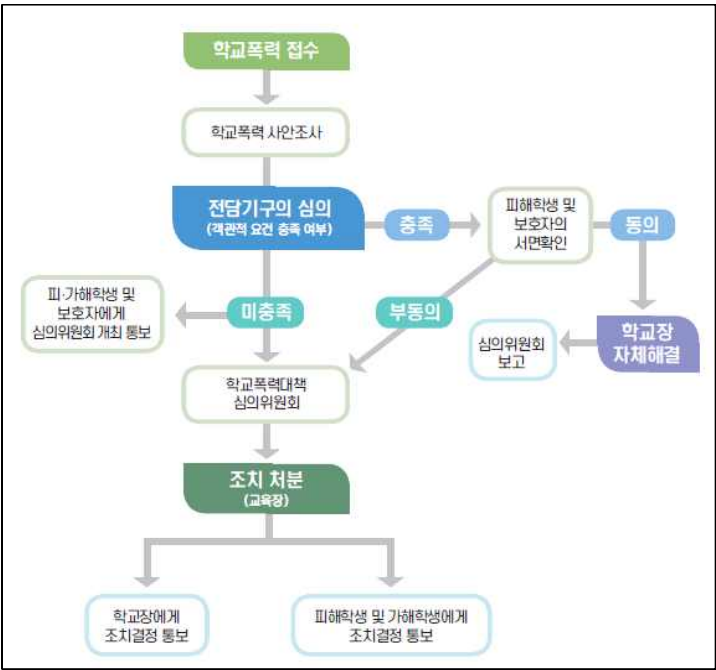
이법 시행령 제19조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 판단 요소로는 ① 학교 폭력의 심각성, ② 학교 폭력의 지속성, ③ 학교 폭력의 고의성, ④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⑤ 화해정도가 있고, 부가적 판단요소로는 조치의 경중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조치를 가중할 수 있다.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개최하고,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며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교육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로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장은 교육장이 내린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고, 교육장의 조치 이행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며, 가해학생이 처분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조치와 관련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나 반대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마찬가지로 교육장의 조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⁷⁾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의 흐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3.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⁸⁾

2. 분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전에는 모든 학교폭력 사건을 자치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안을 해결하였는데, 이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공평하고도 엄중한 처리절차의 확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갈등이 조정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에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만 자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는 경우 많은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양산시킬 우려가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담임교사들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보장하며, 당사자 간의 대화와 중재를

7) 이덕남·유지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2021.3., 8면.

8)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21.3., 46면.

통해 평화적으로 화해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동법 제13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물론 모든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야 하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어야 하고,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아야 하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한다는 4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능하다.

학교폭력의 형태를 살펴보면 그 형태상 형사상의 문제와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지는 경우도 있으나, 형사상의 문제에서도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둔 만큼 모든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범죄자를 선도하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 의한다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는 자칫하면 학교폭력 사건이 은폐 및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앞서 설명한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앞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해당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학교장 종결 이후에 재발하거나 양측 간의 관계악화 및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미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오해를 받아 민원이 발생 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⁹⁾

학생선수의 경우, 훈련을 위해 선수들 간의 합숙을 하는 일이 빈번하고, 선후배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함에 따라 저학년 선수들은 선배들의 잔심부름, 청소, 빨래 등을 도맡아 하게 되고 이러한 잘못된 위계 문화가 지속되면서 새로 들어오는 후배에게 폭력을 대물림하는 구조이며, 과도한 훈련시간의 편중으로 인하여 학업, 친교 등 일반 학생과의 교류가 적고 선수들 간의 교류가 주를 이루는 만큼¹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장의 자체해결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9)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젠더법학연구소),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9.12., 38면 이하.

10) 홍덕기, 앞의 논문(註7), 37면.

특히,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하여 내부에서의 변화 수용 의지가 부족하여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는 현실을 고려하면¹¹⁾ 학교장의 자체해결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11) 유재구, 앞의 논문(註3), 63면.

제3절 학교폭력 조치기록 관리 현황

1.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삭제 절차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학생의 출결상황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 해당 내용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기재유보 조항을 두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의 경우에는 가해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해당 조치를 받은 후 다른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앞서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의 내용은 조치사항의 경중에 따라, 삭제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의 조치는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하며,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의 경우 가해학생의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심의 대상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도 가능하다.

심의대상의 조건으로는 다른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담임교사의견서,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증,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증, 자필의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9호(퇴학)의 경우는 삭제가 불가하다.¹²⁾

2.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분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하여 절차상으로는 법적 근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현행법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선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¹³⁾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찬반의 논란이 있는데, 가해학생 처분조치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를 찬성하는 입장은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가해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며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낙인효과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며, 가해학생은 처분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기재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방식의 차이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차이 및 감정적 대응으로 인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갈등의 확산은 사건 당사자의 심리적,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회복하고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복과 성장의 도모가 아닌 낙인이라는 효과를 찍는 것은 가해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생활지도와 관계 회복이라는 학교 본연의 교육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¹⁴⁾

이러한 연유로 교육부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 조치 중에서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경우에는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항을 도입하고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에 따른 삭제 조건을 확대한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으나, 아직 학생부 기재에 대한 정당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물론,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일반 형사사건과 행위 형태는 같

12)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앞의 자료(註9), 81면.

13)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젠더법학연구소), 앞의 자료(註10), 45면.

14) 정제영, “학교폭력 예방 및 개선 대책”, 「학교폭력에 관한 이해 및 관리 방안」, 2017년도 한국학교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2017.12., 35면.

거나 상당 부분 유사하더라도 가해자가 대부분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인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그들의 죄와는 별도로 그들이 진심으로 피해자에 대해 사죄할 기회를 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제4절 가해학생 조치 결정에 따른 학생선수 가해기록 및 삭제절차 검토

1. 개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서면사과(제1호)부터 퇴학처분(제9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정보의 관리·보존의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 가해학생 가해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삭제 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사항으로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학적사항으로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졸업한 학교의 이름, 졸업 연월일 및 재학 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날짜·내용 등. 이 경우 학적 변동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

출결상황으로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을 기재한다. 이 경우 출결상황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으로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번호, 취득 연월일 및 발급기관과 인증의 종류, 내용, 취득 연월일 및 인증기관 등 기재하여야 한다.

교과학습 발달상황으로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교교육 이수 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 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경우는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제21조제2항).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해당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같은 조 제1항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받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해당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나이스’를 통하여 입력 및 삭제하고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5. 가해학생 가해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삭제 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1. 입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교교체)	* 2020년부터 경미한 사항 학생부에 기입하지 않음
	출결사항 -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학정사항 -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지방자치단체장	
2. 삭제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조치사항 -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 것이 필수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조치사항 - 학생의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 필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5절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자료의 보존에 관한 사항 분석

1. 개요

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정보의 관리·보존에 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검토사항

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등으로 나뉜다.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은 국민 개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70년 간 보존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졸업에 동시에 삭제된 상태로 준영구 보존된다.

또한,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도 삭제 후 준영구 보존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서도 학교생활세부기록부에 자료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표 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 ③ “생략”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⑥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조치사항 삭제 시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 포함)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학생은 심의 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해당 학교의 졸업식 이후부터 2월 말(교육정보시스템 졸업생 학적반영 이전) 사이에 삭제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기재된 ‘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도 같이 삭제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제6절 가해학생의 가해조치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검토

1. 개요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정보의 삭제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검토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또한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은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므로 심의를 거치면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에서도 학교생활세부기록부에 자료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재학기간 동안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사항을 각각 받은 경우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조치사항의 조치 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치사항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하여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없고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가 가능하다.

가해학생의 가해조치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 절차(이는 일반적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절차와 같음)를 거쳐 삭제가 가능하다.

삭제 절차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삭제 담당자 →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최종삭제 절차를 거치며 상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절차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삭제담당자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조 치 사 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대장 관리	• 학교폭력전담 기구로부터 통보 받은 삭제 대상명단 확인 및 확정	• 해당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삭제 처리	• 삭제 대상자의 삭제여부 최종 확인
절 차	•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대상자 명단을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통보	• 삭제담당자 지정	• 삭제 후 그결과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학교폭력전담 기구에 최종삭제 결과 서면으로 통보

※ ‘서면 보고·통보’는 업무관리시스템의 내부결재 시 협조 절차를 거치는 것을 의미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단서규정(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에 따른 삭제 절차는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 ② 학폭위 심의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 ④ 담당자가 삭제 → 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전담기구 확인의 절차를 거쳐 삭제된다.

제3장 가해 학생선수 징계정보 관리·보존의 주요 쟁점

제1절 법 일반원칙 및 법제도적 문제점 분석

1. 개요

가해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대회출전 정지 및 학교 졸업 후 선수생활에서 있어서 선수 등록 금지 등 다양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법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불이익금지의 원칙’, ‘법적용의 형평성 원칙’ 하고 법제도적 문제점에서 폭력 등에 대한 형사적 시효 및 체육단체 징계의 기준이 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효의 문제와 함께 이중징계에 대한 사항도 검토하도록 한다.

2.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학교폭력 징계의 적법성 검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Grundsatz des Übermaßverbots)은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지를 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례성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이라고도 한다.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심사방법인 비례의 원칙 내지 비례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의 조치 또는 수단이 기본권제한의 목적과의 관계에서 적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본권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가 비례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원칙을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 네 개의 부분원칙으로 세분화하고 있다(헌재 2006. 7. 27. 2004헌가13).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원칙 아래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은 예외적인 경우에 최소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제한의 심사방법이다.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정당한지 또한 최소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는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징계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이 요구하는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할 때 두 번째는 수단의 적절성으로 어떤 수단을 택하였을 때, 그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 수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한 수단이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최적의 수단일 필요는 없다(헌재 2008. 4. 24. 2007헌마1456). 또한 법률이 여러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전부 충족해야 하는 완전한 적절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적절성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명백하게 부적절하지 않는 한, 수단은 적절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선택된 수단이 목적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학생선수가 법령과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법 제18조 제1항에 위임을 받아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등 다서가지의 징계 종류를 규정하고 위법이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응하는 징계 종류를 선택하여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방법의 적절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과잉금지원칙에서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된 수단이 어떤 다른 수단들보다도 기본권제한으로 인한 침해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선택된 수단이 명백하게 부적절하지 않아 수단의 적절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다른 수단과의 관계에서 최소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수단보다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단의 적절성이 피해의 최소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택된 수단이 기본권을 가장 덜 제한하여 최소한의 침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입법과정에서는 알 수 없으며, 다른 수단이 기본권제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단이어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피해의 최소성은 보다 약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헌재 2011. 6. 30. 2009헌마406). 헌법재판소도 피해의 최소성에 대하여 “입법자가 공익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

도록이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고 하고 있다(헌재 2012. 5. 31. 2010헌가85).

학생선수의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등 학생선수의 징계부과 과정에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과잉금지원칙을 구성하는 법익균형성은 기본권의 제한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커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은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으려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으로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판단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는 교육적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징계의 방법이나 수준을 적정하고 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면서 징계대상 학생선수에게도 적절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공익을 보호하여 법익균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징계가 법적 제재의 일종이란 점에서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성인선수에 대하여 징계효과를 내는 법적 제재는 이중처벌의 효과가 있다.

다만 과거 징계사유로 인한 국가대표 선발의 배제 등은 징계로 인한 불이익 금지의 시효, 관련 법령이나 스포츠단체의 자치규정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형벌보다도 법적 제재의 효과나 수위가 낮은 징계에 대하여 그 기록을 계속 관리하면서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형벌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 법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적법성 검토

음악, 미술, 엔터테인먼트 등의 문화예술분야와 달리 체육분야에서만 학창 시절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징계에 유사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와 유사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스포츠와 다른 문화예술분야는 문화예술의 관점에서 하나의 분야라는 공통점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문화예술분야는 스포츠가 갖는 고유한 특성에서 차이가 있고, 그 활동분야와 독립된 자체규율이 적용되는 점 등 여러 부분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가 없어서 비교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스포츠선수가 직업의 자유를 행사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을 정도로 정당한지 이를 판단해야 한다.

즉, 같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와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같은 징계를 받았는데,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은 음악콩쿨대회나 각종 연주회 등에 아무런 제재없이 나갈 수 있는 반면,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만 대회에 참여할 수 없거나, 추후 실업팀 선발이나, 국가대표선발에 제외가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학생선수만 차별적으로 법이 특정 누구에만 적용되어 불이익을 주는 등 개인 권익의 침해요소가 될 수 있다.

4. 학교폭력에 따른 이중징계 문제의 적법성 검토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하여 과거 징계기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법적 제재를 했음에도, 그 징계로 인하여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중 제재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징계도 법적제재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또 다시 징계를 받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을 보면 제23조에서 하나의 사유에 대하여 2번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서 금지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하나의 범죄에 대하여 두 번 처벌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일사부재리원칙이라고 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도 해당하며, 이는 징계사유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학창시절 받은 징계에 대하여,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있다.

물론 「헌법」 제13조 제2항의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은 실제적 판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란 점에서 이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의 징계기록으로 인하여 다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중 제재의 효과를 준다는 점에서 이를 규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생시절의 징계를 사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금지에 반하는 것이지만, 징계를 사유로 하지 않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또는 품행, 인성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스포츠 규칙 등에서 국가대표선수 선발 등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스포츠윤리적 차원에서 심사에 있어서 기준을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된 처분이나 조치가 징계에 해당할 만큼 불이익이 크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익형량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학교폭력에 대한 선수 징계에 대한 적법성 검토

학생선수라고 하여도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중에는 학교의 규칙(교칙)이라는 학교 규범의 통제를 받는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을 보면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제2조제4호에서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을 보면 학생선수에 관해서는 제2조 제4호와 제5호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경기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학생선수라고 할 수 있다.

학생선수가 학교생활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학칙을 위반하면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규율을 위반하거나 과실을 범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제재를 말하는데, 교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제재를 학생징계라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보면 학생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라고 하여 학생징계에 관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선수에 의한 학교폭력 역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지는데, 학생선수라 하여도 학생이란 점에서 법령과 학교 학칙에 따라 이를 위반하고 교육상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학생에게 부과되는 법적 제재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선수의 징계는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 및 학생이 속한 학교의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징계의 대상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보아 절차상으로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는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도 보장하고 있다.

6.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학교 학생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가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1조 제6항 제6호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하며, 이 자료는 동 법률 제30조의4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선수도 학생이면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라는 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동 법률은 제18조의13에서 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체육회 등)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동 법률 제18조의13 제3항에서는 체육회 등의 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법률체계를 보면 학생선수의 경우에서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소속 학교의 장이나 소속 경기단체의 장은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보면, 원칙적으로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 제6호를 보면 관계 법률에 따라 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학생선수가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초·중
등교육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
법」 제18조의13에 의한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
교운동부로 소속되어 있는 학생선수가 폭력 등으로 징계 받은 경우나 학교
운동부로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생선수(개인종목 등)나 학생선수가 아닌 일
반학생의 경우는 학부모와 본인의 개인정보제공의 동의가 있어야 징계정보
시스템에 게재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된 경우 이를 시스템에서 지
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범죄행위에 관한 수사나 형의 기록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
법)」에 따라 수사나 형의 실효가 되어 보존기간이 지나면 기록을 삭제하도
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징계정보시스템도 무제한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것
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생선수의 징계기록도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삭
제될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징계정보의 보존기간에 대한 적
법성 문제에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
에 또는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상 징계정보시스템에 계속 게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징계정보시스
템에 징계정보에 대하여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처럼 일
정기간(5년)이 경과 후 삭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7. 학교폭력에 대한 시효관련 적법성 검토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 학교폭력 특성상 학생 때
저지른 범죄이므로 공소시효와 관련하여 「소년법」과의 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사건을 재기하는 가
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년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
라서, 공소시효의 일반원칙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에 따라 범죄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

학교폭력 행위 유형 및 시효기간을 정리하면 「형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표 7. 학교폭력 행위 유형 및 시효기간

죄명(유형)	공소시효기간	조문(근거)	비고
강간죄	10년	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죄	10년	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죄	10년	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년	형법 제299조	
강간등 상해치상	15년	형법 제301조	일부 적용 배제
상해죄	7년	형법 제257조 제1항	
중상해죄	10년	형법 제258조 제1항	상해로 인한 생명 위험
특수상해죄	10년	형법 제258조의2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
폭행죄	5년	형법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죄	7년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
폭행치상죄	7년	형법 제262조	
감금죄	7년	형법 제276조 제1항	단순감금
중감금죄	7년	형법 제277조 제1항	가혹행위
특수감금죄	7년	형법 제278조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
협박죄	5년	형법 제283조 제1항	단순협박
특수협박죄	7년	형법 제284조	단체 또는 위험한 물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0년	형법 제287조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10년	형법 제288조	
약취·유인 등 상해·치상죄	10년	형법 제290조	
명예훼손죄	5년	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년	형법 제307조 제1항	
모욕죄	5년	형법 제311조	
공갈죄	10년	형법 제350조	
강요죄	7년	형법 제324조	
인질강요죄	10년	형법 제324조의2	

또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불법행위의 요건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가해학생의 행위가 고의이며, 위법성과 책임능력이 인정되며 가해학생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살펴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 때 성적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3년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만 알면 되고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¹⁵⁾

따라서,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위의 시효기간이 경과 한 후에 문제제기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적법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된 후 법적 처벌은 불가하나 징계 등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도 폭력의 경우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징계의 적법성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서울고등법원 2009.10.23. 선고 2009나6303 판결.

제2절 통합징계정보시스템 운영 상 쟁점

1. 개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운동부 포함)에 소속된 선수(「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선수 포함),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¹⁶⁾ 포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의 장¹⁷⁾은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의 대한 종합적인 징계정보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스포츠윤리센터가 최종적으로 징계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여기서 쟁

16)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말한다(퇴학처분의 경우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제외로 고등학교만 적용).

17) 운동경기부의 경우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말한다(「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3항)

점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 등의 징계정보와 연동하여 징계정보시스템에 누락없이 최대한 빠르게 입력되는 것이 관건이다.

학교폭력에 사안에 대하여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력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감이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서 입력하는 방법(「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2항)과 학교운동부 소속 학교장이 징계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3항)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사안이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감이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교육감이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 제외)’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8월 18일 법률 제17480호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징계 관련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는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쟁점은 해소되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한(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의 파기(보존연한), 민감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현재 징계정보시스템의 경우 그 대상을 학교운동부 소속 또는 학생선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감이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이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징계정보 대상은 ‘학생선수’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가 아닌 개인 자격의 선수(개인종목)나, 학생선수 신분이 아님 일반 학생에 대한 징계정보는 징계정보시스템이 입력되지 않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중학교 때는 일반 학생이었다가 고등학교 때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징계 사실이 있는 경우는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학생선수 신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니므로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입법취지 등으로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수등록을 하지 않고 스포츠클럽이나 방과 후 교실 등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생선수 신분이 아니므로 위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징계정보 활용 방안의 쟁점

1.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2020년 2월 24일)”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 체계도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즉,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위의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징계이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쟁점

이러한 징계정보에 대한 활용에 있어 다음의 쟁점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형평성 문제이다.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대학 진학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사항 등을 학교 졸업 시 삭제하고 있는 것은 해당 학교 재학 시 처벌 등에 따라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보고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계사항 등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술이나, 음악,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은 대학 진학에 따른 특기자 전형 시 같은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다 해도 불이익이 없는데 체육특기자만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따라 대학자율로 입학 절차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라는 유인기제를 활용하여 도입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아가 형성되기 전 학창시절의 학교폭력 행위를 성인 된 후에 주홍글씨처럼 낙인하여 실질적인 취업제한으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징계나 징벌·형벌의 효과는 교정·교화를 통하여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살인 등 반인류범죄의 경우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정·교화를 통하여 범죄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경우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이 활동하는 시설 등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므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취업 제한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선발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가해행위의 경중 및 피해복구의 노력(피해자외의 합의, 사과, 뉘우침, 사회봉사 등)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징계정보시스템 적용 대상의 문제이다. 위 통합징계정보시스템 운영상 쟁점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징계정보시스템의 경우 그 대상을 학교운동부 소속 또는 학생선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감이나 학교운동부 소속 학교의 장이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징계정보 대상은 ‘학생선수’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생선수가 아닌 일반학생의 신분으로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징계정보시스템에 게재되지 않아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용상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스포츠 ‘선수’라는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일반 학생 신분으로 학교폭력 가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불이익금지원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적법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해외사례 검토

1. 개요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학교폭력 사건의 사법 처리에 앞서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분쟁 조정을 통하여 사건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별도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형법」과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만 14세 미만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면제되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의 보호처분만 내려지며,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경우 보호처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해학생의 감독의무자(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2. 독일

독일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연방단위의 단일법이 없으며, 각 지방법인 「학교법」 내 일부 조문으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질서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형사폭력의 경우에는 「청소년형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다.

독일에서 14세 미만의 아동은 「형법」 제19조에 의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 법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회복적 사법 이념을 우선 추구하는 독일 형사법체계의 특성상 형사절차 외의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참여여부는 소년법원에서 가해자에 대한 양형 판단 시 주요 참작대상이 된다.

3. 미국

연방법에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별도의 법이 없으나, 인종, 피부색, 성별, 장애, 종교 등의 차별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민권법 1964」, 「교육기회평등법」, 「미국장애인법」 등을 적용한다.

주차원의 법제는 주별로 다르나, 대부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법률과 정책을 두고 있다. 일례로, 미시간주는 학교폭력 처벌 조항을 2004년에 「형법」 제750.411t조로 신설하였는데, 이에 따라 사망 사건의 가해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달러(한화 약 1,12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영국

「2002 교육법」 제175조에는 어린이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는 것은 학교와 지방당국의 법적의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장관이 지방당국이나 관리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1989 아동법」 제47조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아동폭력에 관한 교직원과 지방당국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06 교육 및 감사 법」 제89조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1조와 제92조는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훈육은 학교 밖에서의 구금이라고 정한다.

영국에서는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범죄로 보지는 않지만, 심각한 폭력, 강도, 장기간의 협박이나 괴롭힘의 경우는 법률 위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한 괴롭힘과 협박행위는 「1997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법」, 「1988 악의적 통신법」, 「2003 통신법」, 「1986 공공질서법」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어, 만약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 이에 해당하는 범죄라 판단되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5. 프랑스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또래 청소년을 괴롭히는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8개월 및 벌금 7,500유로(한화 약 1,010만원)에 처한다. 미성년자 간 폭력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징역 1년 6개월부터 최대 3년 6개월까지 및 벌금 1,500

유로(한화 약 202만원)부터 최대 7,500유로에 처할 수 있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없으며, 교육적 조치 및 교육적 징계 처분을 받는다. 참고로, 프랑스에서 형법상 성인은 만 18세이지만 만 13세 이상이 되면 미성년자도 일반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은 동일 범죄를 범한 성인에게 선고되는 형벌의 절반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없다.

6. 일본

일본에서 학교폭력은 「형법」이 적용되는데 강제추행(제176조), 상해(제204조), 폭행(제208조), 강요(제223조), 절도(제235조), 공갈(제249조), 기물손괴 등(제261조)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처벌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폭행죄(제208조)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때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사안에 따라 경찰, 아동상담소를 거쳐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14세 이상인 때와 동등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14세 이상인 미성년자인 때에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아동자립지원시설 등 송치)을 받거나 판단에 따라서는 성인과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7. 중국

중국은 「형법」, 「치안관리처벌법」,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을 기반으로 공안부·교육부 등이 협력하여 <학교폭력 종합관리방안>과 <괴롭힘 및 폭력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법에 따라 징계 받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부모 및 후견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유로 「미성년자 범죄예방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 제한 연령은 16세이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해당 연령을 더 낮추라는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상해·방화·폭발 등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2020년 「형법」을 개정하였다.

제5절 소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의 일반원칙인 ‘과잉금지의 원칙’, ‘불이익금지의 원칙’, ‘법적용의 형평성 원칙’ 하고 법제도적 문제점에서 폭력 등에 대한 형사적 시효 및 체육단체 징계의 기준이 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폭력 등에 대한 징계시효의 문제와 함께 이중징계에 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결국 쟁점은 학생선수 신분으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이력을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정보시스템에 게재하고 이를 근거로 대회출전 제한부터 추후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하여 선발을 제한하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형사벌과 달리 징계벌은 징계주체(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되나, 위에서 다룬 ‘과잉금지의 원칙’, ‘불이익금지의 원칙’, ‘법적용의 형평성 원칙’, ‘시효’, ‘이중징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는 적법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향후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에 따른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 전 학창시설의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성인된 시점에서 당시의 징계주체(해당 학교의 장)가 징계이력 등을 법령에 의해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징계정보시스템에 해당 징계사항을 입력하여 보존기한의 정함도 없이 활용하여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시효와 이중처벌의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형사상 및 민사상의 징계시효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규정에서도 폭력 등의 행위의 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5년이 지난 폭력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는 것과 학교폭력행위로 해당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유로 체육단체에서 징계를 하는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향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상 쟁점에 있어서도 징계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상충문제 및 미비점과 징계정보 대상이 학생선수로만 한정된다는 대상의 한계, 활용상 형평성 문제와 학창시설의 학교폭력에 대한 낙인으로 인한 피해 문제, 적용대상의 한계 등의 쟁점도 선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사례의 경우 검토 결과 해외 각국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여 「형법」 등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법적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학교폭력에 따라 체육단체에서 별도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가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 체육단체에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문헌조사에 따른 한계상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형사처벌 등 법적처벌 기간 중에는 대회 등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벌금형은 제외).

제4장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 활용 및 통합관리 방안

제1절 법제도적 쟁점과 개선방안

1. 법제도적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의 조치기록 활용하고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학교생활기록에 따른 징계정보를 관리 및 보관하는 것이 쟁점일 것이다. 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에 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영구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준영구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졸업에 동시에 삭제된 상태로 준영구 보존된다.

결국 학교생활기록이 준영구 보존된다하더라도 학교폭력에 가해학생선수의 조치기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징계기록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최장 졸업일 이후 2년 이내에 삭제되는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징계기록을 관리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중 가해학생 조치기록 등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3장에서 검토한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등을 졸업 시점이나 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여 주는 것은 향후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다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대회출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적용의 형평성, 불이익금지원칙, 이중처벌, 시효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기 전 미성년 시설에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성인이 된

이후에 생계나 삶에 영향을 주는 징계를 준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개선방안

학교생활기록에 따른 가해학생의 조치기록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해서는 징계정보의 통합관리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이나 「학교체육진흥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학교생활기록이 자료협조를 위하여 학교생활기록의 가해학생 조치기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요청하여 자료를 제출 받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안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¹⁸⁾

표 8. 가해 학생선수 조치기록 징계정보시스템 입력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생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u>체육단체 등에</u>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u>요청을 받은 단체 등</u> 은 특별한 사유(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유는 제외한다)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④ 체육회등의 장은 <u>체육지도자와</u>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u>체육지도자에게</u>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u> -----, ----- <u>특별한 사유</u> ----- ----- ③ (현행과 같음) ④ 체육회등의 장은 <u>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과</u> 채용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u>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에게</u> 제1항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18) 이 개정안은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위 개정안을 통해 체육회, 프로스포츠단 등이 선수, 심판 및 임직원의 채용에 있어서도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도록 하여 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이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감이 학교운동부 시절의 폭력 등에 관한 징계이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한 것으로 학생운동부 시절 폭력 가해자의 상급학교로의 진학, 프로스포츠단 및 직장운동경기부 입단, 국가대표 선발, 감독 및 임직원 채용 등의 과정에서 징계이력을 확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취업제한 등이 이루어져 체육계에서 퇴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생활기록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등을 졸업 시점이나 졸업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여 주는 것은 향후 진학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목적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다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대회출전 등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적용의 형평성, 불이익금지원칙, 이중처벌, 시효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회 출전 때 마다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학교장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관련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학교폭력 등으로 징계조치가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안도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교육감이 조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자격심사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¹⁹⁾

19) 이 개정안은 현재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표 9. 체육특기자 자격심사 취소 관련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11조의2(학교운동부 폭력예방교육 등) ① ~ ③ (생략) ④ <u>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선수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여야 하며 조치 사항에 따라 체육특기자 자격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u>

다만, 학생선수 중 일부에 해당되는 체육특기자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법률에 근거규정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²⁰⁾ 등에 따라 상급 학교로의 진학 시에 중학교 입학의 경우 교육장이, 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교육감이 각각 관할 지역의 입학정원 중 일정 인원을 배정 또는 선발하고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체육특기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체육특기자”의 정의,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권한의 주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법령²¹⁾에 따른 경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에 상응하는 조치들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 중학교 진학의 경우

① 교육장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제87조(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 고등학교 진학의 경우

① 교육감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자중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입학전형결과에 불구하고 그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중 그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되,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군에 제한없이 체육종목별로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체육특기자를 배정한다.

21)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④ 학년도별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학교생활기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다.

은 사안에 따라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또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은 일반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 학생선수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제공할 경우, 이를 제공받은 해당 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공통적으로 “학생선수”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또는 그 소관의 스포츠윤리센터)에 제공 또는 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할 것인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국회에서도 판단하고 있어²²⁾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2) 교육부는 개정안 제11조의2 제4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하는 내용이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국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참조).

제2절 가해 학생선수 학교폭력 기록 통합관리(운영) 방안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수 등록 및 대회참가에 대해 학교폭력기록 활용방안 관련 하여는 위 1절에서와 같이 학교폭력기록이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제공이 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다른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이력을 확인하여 대회참가 제한이나 선수등록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개정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적 타당성 등 적법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 개정 전에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경기인 등록시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력이 발생될 경우 제재에 대한 동의를 받고, 경기인 등록시와 대회출전 신청 시 학교장의 학교폭력 징계 확인서(가칭)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다른 개인정보활용 동의와 제3자 제공 동의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종목단체에서 경기인 등록 시 및 대회출전 신청 시 학교장의 학교폭력 징계 확인서(가칭)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 받도록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징계처리가 된 경우 이 사항을 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 스포츠윤리센터를 거쳐 징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에 따른 징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체육단체 등 규정개정을 통해 등록제한 및 대회출전 제한 등에 조치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표 10.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및 변경사항

【학교폭력예방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기간 및 변경사항】

- 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3개월 (동일)
-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동일)
- 8호(전학) : 12개월 (동일)
- 9호(퇴학) : (기존) 영구 → (변경안) 퇴학사유가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인 경우 10년,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년
 - * 퇴학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동안 선수자격 박탈(선수등록 금지 등)도 병행
 - ※ 가해학생 조치 병과시 중한 조치 적용
 - ※ '21.11.1.부터 개최하는 대회부터 적용하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위 발표된 징계조치에 대해 대회출전 정지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수등록 제한 등은 없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대회참가제한만 하는 경우 선수등록을 하고 훈련 등은 참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징계에 대한 이중처벌 문제와 징계양정기준, 1호부터 3호의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 3개월 출전 정지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언어폭력 등 경미한 경우 3개월 이상 1년 이하 출전정지를 폭력 행위가 치료기간의 2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에 그친 경우나, 우발적으로 특별하게 참작한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출전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사항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자아가 형성되기 전 학교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과 성인 지도자나 선수에게 까지 적용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위반행위별 징계양정 기준에 준하는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징계효과 측면에서 학생선수의 경우 학기 및 진학 등에 따른 대회 수 등 학생선수의 대회가 제한적임을 고려하면 징계에 효과는 더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절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및 역할 정립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거버넌스 및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결국 법적으로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관리와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른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소관으로 학생선수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징계이력 등의 관리 및 삭제 등에 관한 교육부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관련 징계정보 등을 교육부로부터 제공 받아야 제3절에 따른 조치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인권보호 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개정 등 세부 법제도 등의 추진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해 학생생활기록의 가해학생 징계기록으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로 징계정보 등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교육부의 반대의견으로 현재 국회 계중이다.

각 교육청 관할 내 학교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지체 없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문화체육관광부 소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²³⁾.

표 11.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관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생 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및 관련 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② ----- ----- ----- ----- 다만,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학교운동경기부 소속일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23) 이 개정안은 현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으로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임

각 교육감의 학교 내 학교운동경기부 소속 학생들의 폭력 사실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의무사항으로 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동 개정안과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할 것인지,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신고 의무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학교장의 의무 및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지고 있는지 교육감이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²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신고 의무를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방안 등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입법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국회 검토가 있었다.²⁵⁾

따라서,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에 따라 가해학생에 학생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등 신고가 되고, 추후 징계정보 등이 공유내지 협조가 가능한 체계를 유지하는 협력체계구축이 필수적일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징계정보시스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의 학생생활기록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징계 이력을 교육부로 협조를 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등은 위의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이력 공유가 안되는 경우와 법개정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선수등록 시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선수의 경우 학교장의 학교폭력 징계 이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제출받은 징계이력을 유무를 확인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등으로 전달하여 징계정보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24)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 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 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시행일 2021. 4.21.]

25) 국회 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21. 3.

것이다.

직장운동경기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및 각 프로연맹, 한국대학스포츠협회의 등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을 위하여 위 제3절 선수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안 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재와 같이 대책 이행상황 및 계획 점검을 하고 이행과제별 쟁점 조정 등에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²⁶⁾

또한, 제재 강화 등 예방과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조치사항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전문가 등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6)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문체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푸른나무재단 등 관계기관·단체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재 회의 등 관련 사항 추진 중에 있음

제4절 선수선발 및 운영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활용방안

1. 체육특기자 전형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방안

체육특기자 전형시 학교폭력 이력 반영 방안에 대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내 체육특기자 전형 요소에 학생부 반영 의무화(’ 21.8월/교육부)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사항 전형 반영시 지원사업 가점(’ 22년 지원사업~/문체부)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평가 지표 중 「학생선수 운영 관리 및 지원」 - 「체육특기자 입시전형 적정성」에 가산점 반영 추진 중에 있다(-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 21. 9.)

다만, 이 경우에도 대학자율로 운영 중인 대학입학전형에서 지원사업에 가점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입시의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공정성 등이 원칙인데 체육특기자만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 진학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체 대학입시에서 학생선수에만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민원제기 우려가 높고 일반 법원칙상에서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특기자제도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교폭력이 있어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입학이 가능한데, 체육특기자만 학교폭력을 이유로 진학에 제대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 등을 고려하였을 때도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입학전형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기록부 반영 등을 통하여 다른 일반학생들과 형평성 등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국가대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강화 방안

국가대표 선발의 경우 현재도 체육단체에서 폭력으로 1년 이상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음으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① 1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와 ②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국가대표 선발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 21. 9.).

다만, 이 경우도 학교폭력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도 결국 졸업 후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확인을 하여야 하는 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관리에 따른 졸업 시징계기록이 삭제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서 제시한 중·고등학교 시설에 선수등록 시나 대회 출전 시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이력 확인서를 통해 집계한 징계정보시스템에 이력을 반영하여 대한체육회가 해당선수의 이력정보 요청을 통해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실업팀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강화 방안

실업팀의 경우 실업팀 표준운영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로서 그 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선발이 될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표준운영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차후 실업팀 운영 규정이 확인 통해 이러한 규정을 반영한 실업팀에게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주요 과제별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 21. 9.)

표 12.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안)

< 실업팀 표준운영규정(안) >

-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 제19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장(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의 장)은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 제23조(징계)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장(직장운동경기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남녀고용평등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집단따돌림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팀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에 다른 가해학생 징계이력 등의 확인 필요하고,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는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8호(전학), 제9호(퇴학) 인 경우나,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등 2회 이상인 경우 등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징계의 경우도 실업팀 소속 선수 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징계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자칫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프로스포츠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강화 방안

프로스포츠 연맹 등 프로스포츠단체에서 선수 계약 시 학교폭력 이력 서약서 및 고등학교생활기록부의 징구방안이 논의 되었고, 각 연맹별 제재조치에 대한 축소안도 논의되면서 각 프로연맹별 상벌위원회 규정개정을 통해 제재조치 등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표 13. 각 프로 연맹별 상벌위원회 규정개정을 통한 제재조치

연맹	내 용
K리그 (축구)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제명하도록 상벌규정 개정
KBO (야구)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실격하도록 KBO규약 개정
KBL (남자농구)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실격하도록 KBO규약 개정
WKBL (여자농구)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제명하도록 WKBL규약 개정
KOVO (배구)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제명하도록 상벌규정 개정
KPGA (남자골프)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제명하도록 상벌규정 개정
KLPGA (여자골프)	학교폭력에 부적절 대응 등 사회적 물의시 최대 제명하도록 상벌규정 개정

다만, 이 경우에도 고교생활기록부만 징구하도록 하는 것은 중학교 시절의 학교폭력 이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에 확인 필요하며, 위의 중
고등학교 시설에 선수등록시나 대회 출전 시 학교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폭력 이력 확인서를 통해 집계한 징계정보시스템에 이력을 반영하여 프로스
포츠연맹 등이 이력정보 요청을 통해 보다 원활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이력
확인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결론

일부 프로스포츠 선수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폭로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요구와 함께 체육 현장에서의 성적지상주의와 인권경시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스포츠 선수의 과거 학교폭력 전력에 대한 처리 방향 제시 및 향후 체육 현장에서 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 발표(‘21.2.24)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6개 기관·단체가 합동 수립하고 있다. 또한 대책 수립에 참여한 6개 기관 및 학교폭력 전문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문체부 2차관 주재)를 구성해 이행 과정에서의 쟁점 해결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제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징계정보의 통합관리 확대, 선수 선발 시 폭력이력 확인·제한 강화, 단체별 제재규정 점검 및 정비, 학교현장 폭력 실태 확인·점검 강화,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 치유·회복 지원, 과거사례 적극대응, 과거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을 위해 성적지상주의 문화개선, 학교현장의 인권의식 개선, 과학적 훈련방식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학교운동부의 학교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징계정보의 통합관리 확대, 선수 선발 시 폭력이력 확인·제한 강화, 단체별 제재규정 점검 및 정비 등은 추진되어야 하나, 일반 법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학생선수의 징계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라고 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등 학생선수의 징계 부과 과정에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해 이번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대회참가 제한은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보복금지, 교내 보상 등에 사항에 대해서도 3개월을 대회참가 징계하는 것이 과연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고려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미성년 시설에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을 성인이 된 후에 자체 징계라고는 하지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직업을 제한하는 제재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법적용의 형평성, 이중징계문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강력한 징계위주의 근절 대책이 아닌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징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모든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 대한 징계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번 조치에 따라 체육단체에 징계받은 사항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사항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폭력 징계 중 1, 2, 3, 7 호를 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곳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동학교급 재학기간 동안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조치(1, 2, 3, 7호 포함)를 받았거나 학교폭력 조치결정일자(교육지원청의 내부결재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졸업과 동시에 징계기록이 삭제된다. 그리고 4, 5, 6, 8 조치는 졸업 후 2년 후 생활기록부 삭제가 원칙이다.

또한, 1, 2, 3호 조치는 '경미한 조치'로 분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조치를 이행한 경우(가령 1호 서면사과조치라면서면사과 조치를 이행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예외적으로 해당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폭력의 징계정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삭제된 기록을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활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입법취지는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

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형벌보다도 법적 제재의 효과나 수위가 낮은 징계에 대하여 그 기록을 계속 관리하면서 징계와 유사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며, 형벌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시효와 관련하여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서 폭력에 대한 시효는 5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에 따른 폭행죄의 경우도 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따른 제재조치가 5년 지난 후에도 제재하는 것은 시효에 대한 일반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현재까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징계정보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²⁷⁾ 징계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나 운영 방안이 예정이므로 이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징계정보 활용에 대한 법의 일반원칙 및 법제도적 문제점, 운영상의 쟁점 등을 위주로 연구한 한계가 있다. 또한 향후 징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징계정보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학생선수에 대한 징계정보를 요청하여 받아야 징계정보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하고, 학생선수들이 대회 출전할 때마다 학교장에게 징계유무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 및 체육단체의 행정상의 부담이 가중되고 해당 학생이나 지도자도 행정부담이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이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과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고, 체육단체 등의 징계정보 등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학교운동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따른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추후 법적과제 등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7) 징계정보시스템은 2022년 중 마련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국가인권위원회(2019). 학생선수 실태조사
- 교육부(2021).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2021).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국가인권위원회(2019).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19 체육백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선수 및 지도자 인권침해 긴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2021).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 이덕난(202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법제의 현황 및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연구. 이
화젠더법학, 13(2).
- 이덕난, 유지연(202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
NARS 현안분석, 제189호
- 정제영(2017). 학교폭력 예방 및 개선 대책, 「학교폭력에 관한 이해 및 관리 방안」,
2017년도 한국학교보건학회 후기 학술대회
- 홍덕기(2021). 스포츠 인권 정책분석을 통한 인권침해 원인과 향후 과제. 스포츠엔터테인
먼트와 법, 24(1).
- 홍중관(2012).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초등상담연구, 11(2),
237-259.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